


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

수신 각 체육관장

참조 사 범

제목 타 무술단체 국기원 승품/단 심사 관련의 건.

1. 귀 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(국기원심사운영512-292호/2013.08.06)

가. 국기원 태권도심사 운영규칙 제7조(심사추천권)

- ① "심사추천권"이라 함은 심사 응시 및 그 업무 처리를 위한 교육적, 행정적 절차로서 태권도 사범과 태권도단체, 기관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.
- ② 국기원 4단 이상자로서 사범자격증을 취득한자에게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며, 추천권자는 응시자의 수련정도와 일정기간 수련정도에 대한 보증으로서 응시에 대한 교육적, 행정적 책임을 지며, 보유단 미만자의 승품·단 심사 응시자에 대하여 심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 단, 4단 이상자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③ 태권도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자에 한하여 심사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행기관은 필요시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해외 응시자로서 심사추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기원 심의위원이 추천하여 심사심의위원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.
- ⑤ 승품·단 심사 시행권한을 국가협회, 태권도단체, 기관에 위임하지 않은 국가 및 지역은 심사추천권을 가진 국기원 등록도장 사범이 국기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.
- ⑥ 국기원과 위임계약을 맺은 국가협회, 태권도단체, 기관은 개별 도장에 심사추천을 위한 ID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ID는 온라인 심사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태권도사범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만을 대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⑦ 관에 신고 된 태권도 시설 또는 태권도 지도 가능 단체 중 ID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, 위임계약에 따라 심사 시행 최종단체에 직접 접수 할 수 있다.
- ⑧ 위 심사추천 절차 ②~⑦항 중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, 해당 심사를 무효화 할 수 있다.

3. 위 심사운영규칙에 따라 타 무술단체(합기도,검도,유도,특공무술,공수도,경호무술)등 우리 태권도단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 무술단체는 국기원 승품/단심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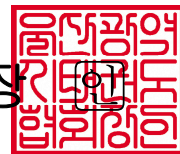
4. 그러나 일부협회 및 시 지부 일선도장에서 국기원 등록회원 ID를 이용하여 국기원 승품/단심사에 추천 응시하고 있어 많은 민원발생과 태권도단체와 타 무술 단체 간의 법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

5. 이는 우리 태권도단체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, 태권도위상을 추락시키는 일로써 전국17개시도 태권도협회는 타 무술단체의 국기원 승품/단심사근절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.

6. 앞으로 타 무술단체에 심사추천 ID를 제공한 회원은 상벌규정을 엄히 적용할 것을 알려 드리며, 일선도장 회원께서는 태권도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첨 부 : 국기원 공문 1부.

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장



담당 김기연 사무국장 김옥태 전무이사 김화영
전 결

시행 율태협 제2013-152호 (2013.08.13) 접수 ()

우. 681-270 울산광역시 중구 영포로 85(남외동) / <http://www.ulsantkd.org>

전화 052)281-2455/2100 / 전송052)292-0166 / E-mail : ulsantk@hanmail.net / 공개